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검 토 보 고

〈 ‘심신장애’ 용어의 일괄 개정 〉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38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총괄 검토의견 .....                               | 2  |
| IV. 주요 개별법에 대한 검토의견 .....                        | 6  |
| 1. 「도서관법」의 개정(안 제1조) .....                       | 6  |
|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제2조) ..... | 10 |
|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     | 13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22.

다. 회 부 일 : 2025. 4. 2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서관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Ⅲ. 총괄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 설치·운영되는 행정위원회에 대한 위원의 임명·위촉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법률의 경우, 「도서관법」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위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원회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도서관법」을 포함한 3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문언과 관련하여,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건강 관련 민감정보<sup>1)</sup>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유사 입법례]

| 법률명       | 조문 내용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p><b>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b>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b>제8조(위원의 해촉)</b>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                                                                                                                                                                                                                                                                                                                                                                                                                                                                         |
|---------------------|-------------------------------------------------------------------------------------------------------------------------------------------------------------------------------------------------------------------------------------------------------------------------------------------------------------------------------------------------------------------------------------------------------------------------------------------------------------------------|
| <b>통일교육<br/>지원법</b> | <p>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 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p> <p>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u>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li> <li>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
|---------------------|-------------------------------------------------------------------------------------------------------------------------------------------------------------------------------------------------------------------------------------------------------------------------------------------------------------------------------------------------------------------------------------------------------------------------------------------------------------------------|

○ 참고로, 동일한 취지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이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의되었음.

#### [유사 취지 법률안 제출 현황]2)

| 발의일<br>(의안번호)             | 소관<br>위원회               | 개정 대상 법률                                                                                                             |
|---------------------------|-------------------------|----------------------------------------------------------------------------------------------------------------------|
| 2025.4.21.<br>(제2210002호) | 국방위원회                   | ① 「군인사법」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 2025.4.21.<br>(제2210003호) | 법제사법<br>위원회             | ① 「검찰청법」<br>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br>③ 「공증인법」 ④ 「변호사법」<br>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⑥ 「외국법자문사법」<br>⑦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 2025.4.22.<br>(제2210018호) | 기획재정<br>위원회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② 「한국은행법」<br>③ 「한국조폐공사법」 ④ 「한국투자공사법」                                                             |
| 2025.4.22.<br>(제2210019호) | 교육위원회                   |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②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br>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④ 「사립학교법」<br>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br>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 2025.4.22.<br>(제2210033호) | 산업통상자<br>원중소벤처<br>기업위원회 | ① 「계량에 관한 법률」 ② 「무역보험법」<br>③ 「발명진흥법」<br>④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2) 해당 법률안은 모두 최보윤의원 대표발의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의 일괄 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발의되었음.

|                           |                       |                                                                                                                                                                                                           |
|---------------------------|-----------------------|-----------------------------------------------------------------------------------------------------------------------------------------------------------------------------------------------------------|
| 2025.4.22.<br>(제2210034호) | 농림축산식품<br>해양수산<br>위원회 | ① 「농약관리법」<br>②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br>③ 「농업협동조합법」 ④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 2025.4.22.<br>(제2210035호) | 정무위원회                 | ① 「개인정보 보호법」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br>③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br>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br>⑤ 「신용보증기금법」 ⑥ 「예금자보호법」<br>⑦ 「한국산업은행법」<br>⑧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br>⑨ 「한국주택금융공사법」<br>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2025.4.22.<br>(제2210037호) | 과학기술<br>정보방송<br>통신위원회 |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br>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br>③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br>④ 「전기통신사업법」<br>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br>⑥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2025.4.22.<br>(제2210038호) | 행정안전<br>위원회           |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br>②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br>③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br>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br>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2025.4.22.<br>(제2210042호) | 환경노동<br>위원회           |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br>②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br>③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IV. 주요 개별법에 대한 검토의견

##### 1. 「도서관법」의 개정(안 제1조)

###### 가. 개정안 요지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호).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 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br>-----<br>-----<br>-----<br>-----.                 |
|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
|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도서관법」 제11조<sup>3)</sup>는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심의 조정함.
-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촉 위원이 됨<sup>4)</sup>.

- 
- 3) 「도서관법」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도서관법」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동법 제13조<sup>5)</sup>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촉 사유는 ①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의 네 가지임.

○ 개정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회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심신장애’ 표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변경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총괄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사의

---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5) 「도서관법」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는 건강 관련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안 제2조)

###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회의 위원이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음(안 제4조제1호).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br>-----<br>-----<br>-----<br>-----.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3조<sup>6)</sup>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4조<sup>7)</sup>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임·해촉 사

- 
- 6)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삭제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시행령」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7)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유는 ①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의 네 가지임.

-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심신장애’ 표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변경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총괄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건강 관련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 가. 개정안 요지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음(안 제24조제2항제2호).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생략)                            |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②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u>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u>                   |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

|                              |                                                  |
|------------------------------|--------------------------------------------------|
| <u>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br/>경우</u> | <u>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br/>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br/>경우</u>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0조<sup>8)</sup>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 8)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4. 제31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6.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7.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sup>9)</sup>하며, 동법 제22조제3항<sup>10)</sup>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함.

○ 또한, 동법 제24조<sup>11)</sup>는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동조 제2항은 위원이 ① 제22조제3항의 결격사

- 
- 9)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1)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6조<sup>12)</sup>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도록 하여 위원의 신분을 보장함.

- 개정안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의 예외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심신장애’ 표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변경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총괄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건강 관련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안 제24조제2항제2호 중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사유로

---

12)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심의·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한 것이 삭제되었으나 해당 부분은 개정 취지와 관계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같은 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정의견]

| 현행                                                                                                                                                                   | 개정안                                                                                                                                                                                                      | 수정의견                                                                                                                                                                                                                                     |
|----------------------------------------------------------------------------------------------------------------------------------------------------------------------|----------------------------------------------------------------------------------------------------------------------------------------------------------------------------------------------------------|------------------------------------------------------------------------------------------------------------------------------------------------------------------------------------------------------------------------------------------|
|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생략)<br>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br>1. (생략)<br>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br>3. (생략) |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br>3. (현행과 같음)<br><u>&lt;신설&gt;</u> |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개정안과 같음)<br>② -----<br>-----<br>-----<br>-----<br>-----.<br>1. (개정안과 같음)<br>2. -----<br>-----<br>----- <u>장기간</u><br><u>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br>3. (개정안과 같음)<br>4. <u>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

문 의 처

02)6788-5384